

[전문개정 2010. 11. 24.]

제4조의2 삭제 <2025. 10. 28.>

제4조의3 삭제 <2025. 10. 28.>

제4조의4 삭제 <2025. 10. 28.>

제4조의5 삭제 <2025. 10. 28.>

제4조의6 삭제 <2025. 10. 28.>

제4조의7 삭제 <2025. 10. 28.>

제4조의8(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) 법 제5조의6에 따른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운송계약 또는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려는 다른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 체결 전까지 알려야 한다.

1.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액수
2.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발생 연월일

[본조신설 2019. 6. 25.]

제4조의8 삭제 <2025. 10. 28.>

[시행일: 2026. 1. 1.] 제4조의8

제4조의9(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업무)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안전운임 위반 신고 접수
2. 위반사실 확인 및 관할 관청에의 통보
3. 신고 처리상황 안내
4.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홍보
5.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정착을 위한 연구 등

[본조신설 2019. 6. 25.]

제4조의9 삭제 <2025. 10. 28.>

[시행일: 2026. 1. 1.] 제4조의9

제4조의10(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) ① 법 제5조의9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화물차주를 대표하는 위원 3명
2. 운송사업자,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(이하 "운수사업자"라 한다)를 대표하는 위원 3명
3. 화주를 대표하는 위원 3명
4.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4명

② 위원회의 위원(이하 이 조에서 "위원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.

1.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: 화물차주, 운수사업자 및 화주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
2. 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